

1. 개정이유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968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행위의 제한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제41조제2항 및 별표 4)
- 나. 셀프충전기 설치에 따른 설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완성 검사 대상에 셀프충전기로 변경하는 공사를 추가(안 제51조제2항)
- 다. LPG자동차 충전소의 부대업무를 위하여 LPG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허용(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 4)
- 라. 단독주택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과 LPG 사용의 목적과 형태가 유사하므로 정기검사 범위를 계량기 전단밸브까지로 합리화하여 다른 사용시설과 검사범위를 정합화(안 별표 20)
- 마. 노후 소형저장탱크를 동일 용량 및 동일 위치로 교체 시 종전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부칙 제36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을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정한 충전설비”란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설비를 말한다.

제51조제2항제2호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목(충전의 라목)의 “바)”를 “바)·사)”로 하고, “하)”를 “하)·거)”로 하며, “태양광 발전설비”를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 발전설비”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바목을 바목부터 사목으로 한다.

다. 사용자가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전설비를 변경하는 공사
별표 4 제1호가목10)가)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용도로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 (2) 연료전지 및 그 부속설비는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연료전지 관련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0종 장소, 1종 장소 및 2종 장소를 말한다)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별표 4 제2호가목5)에 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 10)을 11)로 한다.

거) 제1호가목10)사)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

10)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이하 같은 호에서 “셀프충전”이라 한다)하는 경우 사업자는 충전설비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셀프충전 중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충전방법 및 절차 등을 알리는 적절한 표시를 할 것

나) 충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셀프충전설비 및 그 주위에는 가스누출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사용자가 충전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셀프충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을 감시·제어하고,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지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것

별표 4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3)을 4)로 한다.

3)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최초로 셀프충전할 때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셀프충전을 할 때마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안내할 것

별표 20 제1호다목3) 중 “단독주택(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함)”을 “단독주택”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다목3) 중 “단독주택(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함)”을 “단독주택”으로 한다.

별표 20 제3호다목3) 중 “단독주택(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함)”을 “단독주택”으로 한다.

별표 20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나목을 다목으로 한다.

나. 기술기준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사용자는 충전 중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내사항 등을 준수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3항 중 “소형저장탱크에 의한”을 “소형
저장탱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
고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인
경우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를
용량 및 위치 변경 없이 교체설치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가목10)사) 및 제2호가목5)거)의 개정규
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 이후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에 참여한 충전사업자는 개정 규정에 적
합한 것으로 본다.

② 별표 4 제2호가목10), 같은 호 나목3) 및 별표 20 제4호나목의 개
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 이후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업융합촉진
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에 참여한 충전사업자는 개

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완성검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자가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전설비를 변경한 공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경완성검사 대상이 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셀프충전 전에 변경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에 참여한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u>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u>) 법	제41조(<u>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등</u>) 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	-----
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	-----
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
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	-----
다.	-.
1.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	1. -----
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
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 안	2. -----
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	-----
리가 끝난 후 운행을 하기 위하여	-----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
<신 설>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 <u>일정한 충전설비</u> ”란 별표 4 제2호 가목10)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충 전설비를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 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설비를 말

현행	개정안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생략)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이 되는 변경공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 나. (생략) <u><신 설></u> 다. (생략)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바), 같은 표 제2호가목5)하)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나)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마. ~ 바. (생략) ③ ~ ⑥ (생략)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	<u>한다.</u>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 2.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사용자가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전설비를 변경하는 공사</u> <u>라. (현행과 같음)</u> <u>마. -----</u> -----바)·사), ----- -----하)·거) ----- ----- 태양광 또는 <u>연료전지 발전설비</u> ----- ----- <u>바. ~ 사. (현행과 같음)</u>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

현행	개정안
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 바) (생략) <u><신설></u> 나. ~ 라. (생략)	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0) 그 밖의 기준 가)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u>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용도로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u> (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2) 연료전지 및 그 부속설비는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연료전지 관련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0종 장소, 1종 장소 및 2종 장소를 말한다)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나. ~ 라.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가. 시설기준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 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 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 을 것.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충전사업 용도의 건 축물이나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5) ----- ----- ----- ----- ----- ----- ----- -----.
가) ~ 하) (생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거) 제1호가목10)사)에 따른 연료 전지 발전설비</u>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 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직접 충전 설비를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이하 같은 호에서 “셀프충 전”이라 한다)하는 경우 사업자는</u>

현행	개정안
10) (생략) 나. 기술기준 1) · 2) (생략)	<u>충전설비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u> <u>가) 셀프충전 중 사고를 예방하고</u> <u>사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충전방법 및 절차 등을 알리는 적절한 표시를 할 것</u> <u>나) 충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셀프충전설비 및 그 주위에는 가스누출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사용자가 충전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u> <u>다) 셀프충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을 감시·제어하고,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지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u> 11) (현행과 같음) 나. 기술기준 1)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3) (생략) 다. · 라. (생략)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을 포함한다) 가. ~ 라. (생략)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 나. (생략) 다. 검사기준 1) · 2) (생략)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	3)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최초로 셀프충전할 때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셀프충전을 할 때마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안내할 것 4) (현행과 같음) 다. · 라. (현행과 같음)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을 포함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검사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 -----

현행	개정안
령」 별표 1에 따른 <u>단독주택(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u>,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 5) (생략) 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 · 나. (생략) 다. 검사기준 1) · 2) (생략)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	----- <u>단독주택</u>, ---- ----- ----- ----- ----- ----- ----- ----- ----- ----- ----- 4) · 5) (생략) 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 · 나. (생략) 다. 검사기준 1) · 2) (생략) 3) ----- -----

현행	개정안
령」 별표 1에 따른 <u>단독주택(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u>,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 5) (생략) 3.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 · 나. (생략) 다. 검사기준 1) · 2) (생략)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	----- <u>단독주택</u>, ---- ----- ----- ----- ----- ----- ----- ----- ----- ----- ----- 4) · 5) (현행과 같음) 3.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 · 나. (생략) 다. 검사기준 1) · 2) (생략) 3) ----- -----

현행	개정안
령」 별표 1에 따른 <u>단독주택(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u>,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 5) (생략) 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 가. (생략) <u><신설></u>	----- <u>단독주택</u>, ----- ----- ----- ----- ----- ----- ----- ----- ----- ----- --- 4) · 5) (생략) 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 가. (현행과 같음) <u>나. 기술기준</u> <u>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u> <u>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u> <u>는 자동차에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u> <u>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u>

현행	개정안
<u>나. 검사기준</u> 1) · 2) (생략) 5. (생략)	<u>우 사용자는 충전 중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내사항 등을 준수할 것</u> <u>다. -----</u> 1) · 2)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부 칙 <제367호, 2020. 3. 18.> 제1조 ~ 제7조 (생략) 제8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략)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u>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 제2호가목1)라)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u><신 설></u>	부 칙 <제367호, 2020. 3. 18.> 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소형저장탱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 ----- ----- ----- 1. <u>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인 경우</u> 2. <u>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를 용량 및 위치 변경 없이 교체설치하는 경우</u>

현행	개정안
제9조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
	<u>부칙</u>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가목10)사) 및 제2호가목5)거)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 이후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에 참여한 충전사업자는 개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별표 4 제2호가목10), 같은 호 나목3) 및 별표 20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 이후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에 참여한

현행	개정안
	<u>충전사업자는 개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u> <u>제3조(완성검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u> <u>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자가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전설비를 변경한 공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경완성검사 대상이 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셀프충전 전에 변경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에 참여한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u>